大田直轄市高速鐵道建設事業支援을爲む市稅課稅免除條例案

議案 番號

提出年月日: '92. 11.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國民들의 交通便宜를 增進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韓國高速 鐵道建設公團이 建設中인 高速鐵道 建設 事業을 圓滑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稅制 支援 하고져 함.

2. 主要骨子

- 가. 課稅免除 對象은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이 高速鐵道建設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爲 하여 取得. 登記하는 高速鐵道本線, 정차장, 車輛基地 및 정비창, 궤도부설전진기지, 송전선 施設等 高速鐵道 建設事業用 財産 (案 第2條)
- 나. 課稅免除 稅目은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案 第2條)
- 다. 條例의 適用時限: '98. 12. 31.

3. 參 考 事 項

가.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法

- (1) 第1條 (目的) 이 法은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이하"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鐵道 交通綱의 확충을 위한 高速鐵道를 효율적으로 建設함으로서 國民의 交通便宜 를 增進하고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第2條 (定議) 이 法에서 "高速鐵道"라 함은 列車가 主要區間을 每時 200킬로미터 이상의 速度로 走行하는 鐵道로서 交通部長官이 指定. 告示하는 鐵道를 말한다.
- (3) 第3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4) 第4條 (設立) 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住所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나. 地方稅法

- (1) 第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 하다고 認定할때에는 課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第9條 (課稅免除等을 위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다. 立法豫告

(1) 期間: '92. 10. 7. ~ 10. 27. (20日間)

(2) 方法: 市公報 ('92. 10. 7. 第126號)

(3) 結果: 意見없음.

대전직할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면제) ①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고속철도 본 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4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예)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3)(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